

제1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8. 3. 4(화)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의안번호 제2008 - 9호>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년 2월 21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년 2월 26일

II.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공장현황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 규 모
 - 부 지 : 460m²(무상임대 : 화강석재 강신곤)
⇒ 부지임대 : 2007. 7. 1 ~ 2016. 6. 30(9년간 계약체결)
 - 건 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 1층 / 392m²
- 준 공 : 2007. 12. 28(준공식 : 2008. 1. 11)
- 주요시설 : 건 물 / 광촉매 코팅석 생산설비 등

- 용 도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 생산
- 소요예산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 운영계획

○ 방 침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원활한 관리·운영
- (주)거창석재조합과 상호 협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화 지원

○ 개 요

- 사업내용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수익허가
 - 허가목적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의 원활한 생산 및 마케팅
 - 허가권자 : 거창군청 경제과장(행정재산 재산관리관)
 - 허가대상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이사장
 - 허가물건 : 부지 / 설비 / 건축물 / 부대시설
 - 허가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추진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와 수의계약

○ 추진계획

- 사용·수익허가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신청 ⇒ 처리
 - 조건부 허가 : 재산보존 책임 / 원상태로 반환 등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 허가와 동시 부과
- 손해보험증서 징구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방안

《 제 1 안 》 : 부 과

- 근 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1항

〈 큰 거 내 용 〉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산출금액 : 451,583,580원(재산가액)× 50/1,000(요율) = 22,579,170원

《 제 2 안 》 : 면 제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근 거 내 용 〉

-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수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시행령 제17조 제4항 : 제17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VI.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제2기 신활력사업 세부사업 승인 후 예산반영 예정
⇒ 공장 운영비 : 인건비 / 재료구입비 / 공공요금 등

IV.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거창화강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면제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8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요건과 대부료 요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당해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화강석의 가공생산은 거창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물생산으로 보아

지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을 운영하는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사용료 면제) ①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④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동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8.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